

[붙임 5]

## 서 약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기간제근로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본인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다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근무 중에 알게 된 기밀사항은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 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퇴근시간 및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의 모든 근무수칙을 준수한다.
4.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부당하게 유출하지 않는다.
5. 업무 수행중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6.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부당한 지시를 하였을 때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차상급자에게 보고한다.

2023년 월 일

서약자 : (인)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 귀하

[붙임 6]

■ 어린이병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별지 서식] <개정 2015.9.25.>

(앞쪽)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구 분	② 시험실시 기관	③ 응시직명	④ 응시번호	⑤ 성 명		사 진 (3cm × 4cm)  ※ 압인 또는 계인
⑥ 검사 시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기간제 근로자		(한 자)	( )	
⑦ 재 사 용				⑧ 주민등록번호		

**검 사 내 용**

키	cm	체 중	kg
가슴둘레	cm	혈 압	
(교정)시력	좌: ( )	색 신 (색 각)	(교정)청력
	우: ( )		
안 질 환		이 비 인 후 질 환	
치 아		호 흡 기 질 환	
간 질 환		신 경 질 환	
소 화 기 질 환		피 부 질 환	
순 환 기 질 환		정 신 질 환	
비 뇨 기 질 환		혈청검사(매독)	
흉부X선 검사		기 타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사 결과	[ ] 합 격	합격 또는	
합격 여부	[ ] 불 합 격	불합격 사유	
판정 보류 사유 및 정밀검사 필요 여부	[ ] 판 정 보 류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유효기간	판정일부터 1년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가.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 다.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기입한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의료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또는 계인(契印)을 해야 합니다.
2. "검사 내용"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함
  -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함
3.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만성골수성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 '매독(syphilis)' 양성으로 나타나나, 유효적절한 치료를 하여 감염성이 없음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나. 불합격 사유 기재의 예
    - 두 눈의 교정시력이 왼쪽 0.1, 오른쪽 0.1
    - 혈소판 수가 혈액 1마이크로리터(microliter)당 6만개 이하인 '혈소판 감소 자색반'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됨
  - ※ 판정 보류 사유: 합격 또는 불합격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4.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